

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현황 (CEO)

1. 추진목적

-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의 실효성 제고

2. 운영 근거

- '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경영혁신대상기관(224개)의 공통 추진과제로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 · 운영
* 공사는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정 ('06. 12. 11) 운영
- 공사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4조(계약방법)
 -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시기 : 임기 개시 3개월 이내
 - 계약체결 방법 : 사장, 감사 ↔ 선임 비상임이사, 사장 ↔ 상임이사

3. 주요 내용

-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
 - 금고형 이상 : 각 위반년도 성과급 51% 이상 100%이내 차감지급 또는 환수
 - 벌금형, 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 : 각 위반년도 성과급 50% 이내 차감지급 또는 환수
-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시효
 - 청렴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3년
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)
 -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퇴직 후까지 적용

4. 직무청렴계약 체결현황

체결대상	체결일자
사 장(이병호) ↔ 선임비상임이사(정윤정)	2022. 3. 24